

탕정 트라펠리스 아파트 잔여세대 재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사무소 운영 안내

- 금번 분양 대상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별도의 분양사무소를 설치하여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접수 업무와 당첨자 세대관람 및 계약서 작성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소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대로 37, 트라펠리스 아파트 단지내 중심상가 112호에 2021. 3. 2.(화) ~ 2021. 3.19.(금)까지 운영 될 예정입니다. (041-910-3301, 3306)
- 코로나19로 인해 세대관람은 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외)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하여 진행되며, 당첨자 (동반자 1인 포함)는 본인이 당첨된 해당 세대만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분양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을 위해 분양사무소 방문시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분양사무소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또는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분양사무소 내 상담전화 (041-910-3301, 3306)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셔서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 9. 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2. 8.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4호에 따라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포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일반에게 다시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5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여 시행사에 반납된 주택을 당초의 분양가격으로 다시 일반에게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도배, 마루, 타일, 페인트, 시트지 등 마감재의 오염, 손상, 파손이 있으며, 전기제품과 옵션품목, 주방가구, 불박이장, 수납장을 포함한 모든 설치품목 (조명, 스위치, 콘센트, 조절기, 감지기, 방문, 창문, 방충망, 손잡이, 빌트인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렌지후드, 가스렌지,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싱크대, 주방액정TV, 라디오, 수전, 샤워기,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거울, 비데, 환풍기, 환기구, 월패드, 전열교환기, 빨래건조대, 도어락 등) 에는 오염, 손상, 파손, 기능저하, 미작동, 오작동, 소음, 탈락이 있을 수 있으며, 가벽을 철거하여 침실을 통합하거나 주방가구를 철거한 세대도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이에 대하여 수선보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로 옵션의 유무, 내부 마감재와 설치품목의 노후 정도가 다르고, 가벽을 철거하여 침실을 통합하거나 주방가구를 철거하는 등 세대별 상태가 상이하고, 견본주택을 관람하지 못한채 청약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청약에 임해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 된 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당첨자로 분류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첨자의 계약포기로 인한 것으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3호 바목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아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및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아산시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사무소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분양대금의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당첨자는 개인별로 금융기관에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유로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을 미납하게 되는 때에는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세대관람	계약체결
일정	2021. 2.18.(목)	2021. 2.19.(금)	2021. 2.25.(목)	2021. 3. 2.(화) ~ 2021. 3.12.(금)	2021.03.15.(월) ~ 2021.03.19.(금)
방법	인터넷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사전예약 후 분양사무소 내방 (10:00 ~ 17:00)	사전예약 후 분양사무소 내방 (10:00 ~ 17:00)
장소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7, 트라펠리스 아파트 중심상가 112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주택과 - 5849호 (2021. 02. 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2~39층 20개동 총 3,953세대 중 124세대 (일반공급 124세대)

■ 입주시기 : 2021년 3.22.(월) ~ 2021. 5. 21.(금)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공급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1-000042	073.9348	73	73.9348	26.4268	100.3616	40.5580	140.9196	34.3100	67
		083.4986	83	83.4986	29.4202	112.9188	45.8044	158.7232	38.7500	30
		084.6800A	84	84.6800	23.4310	108.1110	46.4525	154.5635	39.3000	14
		099.4501	99	99.4501	35.1667	134.6168	54.5549	189.1717	46.1500	8
		107.0400	107	107.0400	28.9765	136.0165	58.7184	194.7349	49.6800	4
		125.2500	125	125.2500	33.3822	158.6322	68.7078	227.3400	58.1300	1
합계										124

■ 공급금액

주택형	동	호	계약금	잔금	계(분양가)	주택형	동	호	계약금	잔금	계(분양가)		
73.9348	0402 (36층)	0404	21,895,000	197,055,000	218,950,000	83.4986	0402 (36층)	0201	23,623,000	212,607,000	236,230,000		
		1304	22,344,000	201,096,000	223,440,000			0401	23,876,000	214,884,000	238,760,000		
		3504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0701	24,129,000	217,161,000	241,290,000		
	0103	21,333,000	191,997,000	213,330,000	1901			24,508,000	220,572,000	245,080,000			
	0303	21,895,000	197,055,000	218,950,000	2001			24,634,000	221,706,000	246,340,000			
	0403	21,895,000	197,055,000	218,950,000	2006			25,645,000	230,805,000	256,450,000			
	0603	22,119,000	199,071,000	221,190,000	2501			24,634,000	221,706,000	246,340,000			
	0604	22,119,000	199,071,000	221,190,000	3101			24,887,000	223,983,000	248,870,000			
	0803	22,119,000	199,071,000	221,190,000	0403 (37층)			0701	24,129,000	217,161,000	241,290,000		
	0904	22,119,000	199,071,000	221,190,000				1201	24,381,000	219,429,000	243,810,000		
	1004	22,344,000	201,096,000	223,440,000			3301	24,887,000	223,983,000	248,870,000			
	0403 (37층)	1204	22,344,000	201,096,000	223,440,000		3601	24,887,000	223,983,000	248,870,000			
		1303	22,344,000	201,096,000	223,440,000		0502 (35층)	0201	24,822,000	223,398,000	248,220,000		
		1704	22,456,000	202,104,000	224,560,000			0206	25,590,000	230,310,000	255,900,000		
		1803	22,456,000	202,104,000	224,560,000			0301	25,069,000	225,621,000	250,690,000		
		1804	22,456,000	202,104,000	224,560,000			0306	25,844,000	232,596,000	258,440,000		
		1903	22,456,000	202,104,000	224,560,000			0501	25,335,000	228,015,000	253,350,000		
		2204	22,569,000	203,121,000	225,690,000			0701	25,335,000	228,015,000	253,350,000		
		2304	22,569,000	203,121,000	225,690,000			0801	25,335,000	228,015,000	253,350,000		
		2503	22,569,000	203,121,000	225,690,000			1101	25,651,000	230,859,000	256,510,000		
		3003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0503 (37층)	0101	24,443,000	219,987,000	244,430,000	
		3104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0201	24,822,000	223,398,000	248,220,000	
		3303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0401		25,069,000	225,621,000	250,690,000		
		3304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0501		25,335,000	228,015,000	253,350,000		
		3404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0701		25,335,000	228,015,000	253,350,000		
		3504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1001		25,651,000	230,859,000	256,510,000		
		3603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1701		25,856,000	232,704,000	258,560,000		
		3703	22,793,000	205,137,000	227,930,000		1801		25,856,000	232,704,000	258,560,000		
		0502 (35층)	0204	23,313,000	209,817,000		233,130,000		2101	26,113,000	235,017,000	261,130,000	
	0303		23,544,000	211,896,000	235,440,000		3301		26,369,000	237,321,000	263,690,000		
	0403		23,544,000	211,896,000	235,440,000		다음장에 계속						
	0604		23,795,000	214,155,000	237,950,000								
	0703		23,795,000	214,155,000	237,950,000								
	1204		24,091,000	216,819,000	240,910,000								
	1303		24,091,000	216,819,000	240,910,000								
	1403		24,091,000	216,819,000	240,910,000								
	1504		24,091,000	216,819,000	240,910,000								
	1804		24,284,000	218,556,000	242,840,000								
	3403	24,766,000	222,894,000	247,660,000									

주택형	동	호	계약금	잔금	계(분양가)	주택형	동	호	계약금	잔금	계(분양가)	
73.9348	0503 (37층)	0103	22,956,000	206,604,000	229,560,000	84.6800	0401 (36층)	0101	22,254,000	200,286,000	222,540,000	
		0104	22,956,000	206,604,000	229,560,000			0106	23,222,000	208,998,000	232,220,000	
		0303	23,544,000	211,896,000	235,440,000			0501	23,101,000	207,909,000	231,010,000	
		0304	23,544,000	211,896,000	235,440,000			1701	23,464,000	211,176,000	234,640,000	
		0404	23,544,000	211,896,000	235,440,000		0404(35층)	1701	23,464,000	211,176,000	234,640,000	
		0603	23,795,000	214,155,000	237,950,000		0501 (38층)	0101	23,631,000	212,679,000	236,310,000	
		0604	23,795,000	214,155,000	237,950,000			0206	24,741,000	222,669,000	247,410,000	
		0703	23,795,000	214,155,000	237,950,000			2001	25,246,000	227,214,000	252,460,000	
		1104	24,091,000	216,819,000	240,910,000			2501	25,246,000	227,214,000	252,460,000	
		1204	24,091,000	216,819,000	240,910,000			3201	25,494,000	229,446,000	254,940,000	
		1303	24,091,000	216,819,000	240,910,000		0504 (36층)	3801	25,494,000	229,446,000	254,940,000	
		1603	24,284,000	218,556,000	242,840,000			0201	23,998,000	215,982,000	239,980,000	
		1903	24,284,000	218,556,000	242,840,000			0206	24,741,000	222,669,000	247,410,000	
		2003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99.4501	0403 (37층)	1401	24,799,000	223,191,000	247,990,000
		2103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0505			29,970,000	269,730,000	299,700,000	
		2104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1302			29,066,000	261,594,000	290,660,000	
		2203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2402			29,368,000	264,312,000	293,680,000	
		2304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3202			29,669,000	267,021,000	296,690,000	
		2404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3302			29,669,000	267,021,000	296,690,000	
		2504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3502			29,669,000	267,021,000	296,690,000	
		2604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0502(35층)		0502	29,611,000	266,499,000	296,110,000	
		2703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2002	30,520,000	274,680,000	305,200,000	
		2904	24,525,000	220,725,000	245,250,000			0401(36층)	0804	30,586,000	275,274,000	305,860,000
		3003	24,766,000	222,894,000	247,660,000	107.0400		0404(35층)	0303	30,282,000	272,538,000	302,820,000
		3203	24,766,000	222,894,000	247,660,000				3103	31,500,000	283,500,000	315,000,000
		3204	24,766,000	222,894,000	247,660,000			0504(36층)	1304	31,853,000	286,677,000	318,530,000
		3404	24,766,000	222,894,000	247,660,000				0404(35층)	0202	34,962,000	314,658,000
		3704	24,766,000	222,894,000	247,660,000	125.2500	공란					

- 상기 세대별 분양가는 준공년도별로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최초 임대분양 당시의 분양가격과 동일한 금액임.
- 상기 주택 중 401동 ~ 404동은 2013.02월 최초 입주하였고, 501동 ~ 504동은 2014.02월 최초 입주하였음.
- 상기 주택은 거실을 기준으로 1호라인은 북동향, 2호라인은 동향, 3,4호 라인은 남동향, 5호라인은 남향, 6호라인은 남서향 임.
- 402동, 404동, 502동, 504동은 필로티 구조로서, 필로티 층의 위층부터 1층이 시작됨.
- 상기 표의 층수는 동별 최상층을 표기하였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면적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단수정리하여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아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아산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사전 연습을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은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① 1순위 청약자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형에 청약하는 자는 가정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추첨됨.

② 1순위 청약자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에 청약하는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③ 2순위 청약자 전원은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기준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순위별 입주자 저축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주거전용 85㎡ 이하	<p>가점제 40%, 추천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p>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로 접수)</p> <p>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p> <p>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천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p> <p>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주거전용 85㎡ 초과	<p>청약신청 시 모두 추천제로 접수되며 추천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p>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p> <p>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p>
	2순위	전 주택형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③입주자지속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신청자가 아산시 이외의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청약접수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2021. 3. 2. ~ 2021. 3.12)에 분양사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도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2021. 3. 2. ~ 2021. 3.12)에 분양사무소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및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p>[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1. 2. 18. (목)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접속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 에서 “청약홈”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설치 후 실행
	2순위	2021. 2. 19. (금) 08:00 ~ 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옵션의 유무, 내부 마감재 및 설치품목의 노후 등 상대가 상이하하며, 견본주택을 관람하지 못하고 청약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청약에 임해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당첨자로 분류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첨자의 계약포기로 인한 것으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V 당첨자 발표 장소 및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 2. 25. (목)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청약홈”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2. 25. (목) ~ 2021. 3. 6.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문자 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2. 25.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구분	사전 세대 관람 및 서류 제출	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
일정	2021.03.02.(화) ~ 2021.03.12.(금) 10:00 ~ 16:00	2021.03.15.(월)부터 계약서 작성시 까지	2021.03.15.(월) ~ 2021.03.19.(금) 10:00 ~ 16:00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외)는 사전 세대 관람 및 서류 제출 기간에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분양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세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세대 관람은 당첨자 본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진행되며, 당첨자가 세대관람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1명에 한하여 세대관람이 가능 합니다.
- ※ 세대관람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외)를 대상으로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예약 방법은 당첨자 발표 후에 별도로 당첨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의 관람 일정은 추후 예비입주자에게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미계약 세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예비입주자 계약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대관람은 불가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전 세대 관람 및 서류 제출 기간에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아래의 구비서류를 사전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등 확인) 특히,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후 계약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사전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일 방문시 계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 사전 세대 관람 및 서류 제출 기간 이내에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분양사무소로 통지 후 계약서 작성 기간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 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 작성 기간에는 세대 관람이 불가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인해 서류 제출일의 다음날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로 도배, 마루, 타일, 페인트, 시트지 등 마감재의 오염, 손상, 파손이 있으며, 전기제품과 옵션품목, 주방가구, 욕실가구, 불박이장, 수납장, 화장대를 포함한 모든 설치품목과 부착물, 시설물 (조명, 스위치, 콘센트, 조절기, 감지기, 방문, 창문, 방충망, 손잡이, 빌트인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렌지후드, 가스렌지,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싱크대, 주방액정TV, 라디오, 수전, 샤워기,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거울, 비데, 환풍기, 환기구, 월패드, 전열교환기, 빨래건조대, 도어락 등등) 에는 오염, 손상, 파손, 기능저하, 미작동, 오작동, 소음, 탈락이 존재할 수 있고, 가벽을 철거하여 침실을 통합하거나 주방가구를 철거한 세대도 있으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세대 관람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이러한 노화, 손상, 고장, 불량, 부존재에 대하여 수선보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계좌 안내

- ※ 반드시 세대관람 후 계약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입금 후에는 본인 변심에 의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납입한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2021.03.15.(월)부터 계약서 작성시 까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 직원에게 현금 또는 수표를 이용한 현장 납부는 불가합니다.
- ※ 입금시 반드시 입금자'에 동·호수를 8자리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302동 204호의 경우 0302 0204 기재)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잔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1-097440	삼성디스플레이㈜

■ 사전 서류 제출 :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는 아래 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2021.03.02.(화) ~ 2021.03.12.(금)]에 분양사무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사전 제출 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류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모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2018.12.1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자녀포함 출입국사실증명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발급가능)]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직계존속 부양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상의 기간동안 출입국사실 기록 표기하여 발급) -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출입국사실 기록 표기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제외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배우자 유무 확인불가시] 해당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복무확인서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므로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또는 위임인이 지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서류접수 장소에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서 작성 일정

구분	계약서 작성 일정	계약서 작성 장소
계약서 작성	2021.03.15.(월) ~ 2021.03.19.(금) 10:00 ~ 16:00	분양사무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7, 트라팰리스 아파트 중심상가 112호)

※ 당첨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추가 구비서류 (해당시) 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서 작성시 구비사항 : 당첨자는 아래 서류를 계약서 작성 기간 [2021.03.15.(월) ~ 2021.03.19.(금)]에 지참하고 계약을 체결 하셔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작성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 계약금 입금 확인증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서)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통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대리인 작성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므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 위임용) 또는 위임받는 사람이 지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하는 자의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 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포기하여 시행사에 반납된 주택을 일반에게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세대별로 도배, 마루, 타일, 페인트, 시트지 등 마감재의 오염, 손상, 파손이 있으며, 전기제품과 옵션품목, 주방가구, 욕실가구, 불박이장, 수납장, 화장대를 포함한 모든 설치품목과 부착물, 시설물 (조명, 스위치, 콘센트, 조절기, 감지기, 방문, 창문, 방충망, 손잡이, 빌트인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렌지후드, 가스렌지,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싱크대, 주방액정TV, 라디오, 수전, 샤워기,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거울, 비데, 환풍기, 환기구, 월패드, 전열교환기, 빨래건조대, 도어락 등등) 에는 오염, 손상, 파손, 기능저하, 미작동, 오작동, 소음, 탈락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가벽을 철거하여 침실을 통합하거나 주방가구를 철거한 세대도 있으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세대 관람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이러한 노화, 손상, 고장, 불량, 부존재에 대하여 수선보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포기하여 시행사에 반납된 주택을 일반에게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이미 설치된 옵션품목, 설치품목 및 부착물, 시설물과 내부 마감재의 추가신청, 변경요청, 제거요청, 수선요청 등은 불가능 하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이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상, 수선, 보수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01동 ~ 404동은 2013년에 최초 입주하였고, 501동 ~ 504동은 2014년에 최초 입주가 완료되어 입주자가 거주하였던 아파트로서, 시공사의 세대별 점유부의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금번에 분양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세대별 점유부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 및 기타 설치품목의 경우 제조사별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따른 A/S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제조업체가 부존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기한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주변의 공사등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단지내 도로로 인한 자동차전조등 등을 포함한다) 소음, 진동 (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신고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대출 취급기관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계약자 스스로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대출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분양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며, 개인의 대출 불가사유로 인하여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 (트라펠리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입주자 대표)에 평형별 책정된 관리비에치금 등(선수관리비)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분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 판정 또는 계약 포기시에도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안내(「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VI

발코니 확장 및 세대별 설치품목

■ 발코니 확장

- 전세대 발코니 확장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없습니다.

■ 세대별 설치품목

- 본 주택은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5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여 시행사에 반납된 주택을 다시 일반에게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이미 옵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치된 옵션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기존 입주자의 사용으로 인해 오염, 소음, 손상, 파손, 기능저하, 미작동, 오작동이 존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상, 수선, 보수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미 설치된 옵션품목의 추가요청, 변경요청, 제거요청, 수선요청, 보수요청, 보상요청은 불가하며, 소유권이전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변경 또는 수선 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및 기타 설치품목의 경우 제조사별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따른 A/S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제조업체가 부존재 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 (전용면 적기준)	동	호	옵션설치품목	비고
73.9348	0402	04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3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액정TV, 월패드, 빨래건조대	
		35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403	0103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303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403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603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액정TV, 월패드, 빨래건조대	
		06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침실1에어컨, 침실2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803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침실1,2 통합
		09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0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2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303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7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803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804	거실에어컨,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99.4501	0403	0505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3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침실1에어컨, 빌트인김치냉장고, 감성조명, 현관중문,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24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침실1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32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33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중문,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35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502	05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20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중문,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07.0400	0401	0804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침실1에어컨, 침실2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303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0404	3103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냉장고 자리2개
		0504	1304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빌트인김치냉장고,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라디오, 월패드, 빨래건조대
125.2500	0404	0202	거실에어컨2, 안방에어컨, 침실1에어컨, 침실2에어컨, 침실3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빌트인김치냉장고, 전기2구쿡탑, 현관중문, 현관아트월(거울), 가스렌지, 렌지후드, 오븐, 식기세척기, 절수페달, 공용욕실비데, 안방욕실비데, 아일랜드 식탁, 주방액정TV, 월패드, 빨래건조대	

Ⅶ

기타

- 본 아파트는 2006년 9월 7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된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입주기간	입주방법	잔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2021. 3. 22(월) ~ 2021. 5. 21.(금)	입주기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이사일을 미리 예약하여 이사당일 잔금납부 후 입주	1005-301-097440	삼성디스플레이(주)

- ※ 본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공실세대로서 입주일 이전에 분양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주당일 잔금납부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 (트라펠리스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관리비예치금 (선수관리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세대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 또는 그에 준하는 보수작업이나 빌트인제품 시공은 입주잔금납부 후 가능합니다.
- ※ 도배, 커튼, 블라인드, 베란다 탄성코트, 타일 줄눈시공, 입주청소는 잔금납부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작업을 처음 시작한 날부터 관리비가 부과 됩니다.
- ※ 이사일이 정해지면 생활지원센터 (041-544-7221)에 연락하여 이사예약을 하여야 하며, 다른세대와 이사일정이 겹치는 경우 부득이하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트라펠리스 아파트는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는 불가하며, 엘리베이터로 이사하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는 세탁실 입구 및 세탁기 자리가 협소하여 대형 세탁기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VIII

단지 여건사항

■ 일반공통

- 당정 삼성트라펠리스 아파트는 총5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클러스터는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총 20개동) 각각의 클러스터는 “우리동네” 개념을 도입하여 클러스터별 커뮤니티시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정 삼성트라펠리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따라 아파트 및 커뮤니티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GES (구역형 집단에너지 방식)에 의한 중앙난방이며 개별 세대별 온도조절이 가능합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헬륨,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상층부 세대는 옥상에 설치된 항공유도등 및 옥상조형물의 조명과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지상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상가)은 이미 별도로 분양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간 하나의 단지로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입니다.
- 본 아파트의 총주차대수는 5,833대 (세대당 1.47대)이며, 각 클러스터별로 지하2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제한높이는 2.3m이며, 지상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고 트라펠리스 생활지원센터가 유지 관리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북측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이 있으며, 제조공정에 따라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측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남측에는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 및 산업시설이 건설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남측에 아산테크노 산업단지 부지가 있으며, 공동주택 및 산업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티 시설

- 센터커뮤니티 (실내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다목적실, 북카페, 공부방 등) 와 각 클러스터별 커뮤니티시설 (세탁실, 탁구장, 독서실, 다목적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생활지원센터에 의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시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제한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단지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키즈카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성능 인정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 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①②③④
		중량충격음	①②③④
	화장실 소음		①②③④
		경계소음	①②③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①②③④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①②③④
	내구성		①②③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 등급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①②③④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①②③④
	일조(빛환경)		①②③④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적용	①②③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①②③
	에너지성능(열환경)		①②③④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전용부분	①②③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화재소방 등급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①②③
		배연 및 피난설비	①②③
		내화성능	①②③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물산주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농서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상일동)
법인등록번호	134511-0187812	110111-0015762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012-용인시-임대사업자-2548	서울특별시-주택2003-021

▣ 분양문의 :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7, 탕정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중심상가 112호 ☎ 041-910-3301, 3306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시 관계법령이 우선함)